

# 공 보

제500호 2015. 9. 16. (수)

선	기관의 장
결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5-120호 도로명주소 고시 ..... 3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5-794호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5

거창군 공고 제2015-795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10

거창군 공고 제2015-798호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1

거창군 공고 제2015-800호 「거창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 입법예고 ..... 17

거창군 공고 제2015-804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3

거창군 공고 제2015-805호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

거창군 공고 제2015-810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 34

거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공고 제2015-18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5

거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공고 제2015-20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1

의 관									
--------	--	--	--	--	--	--	--	--	--

거창군 고시 제2015 - 120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14.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받들길 33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00-1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밭들길33	2009-12-28	2015-09-14	밭이 많아서 붙여진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서흥여객 자동차 터미널)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28-3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1길 116	2009-04-01	2015-09-14	운정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761-1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076-22	2009-07-02	2015-09-14	지명(덕유산+월성계곡) 활용	
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217-15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841	2009-07-02	2015-09-14	거창군 거창읍과 함양군 안의면을 연결하는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산108-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930-33	2009-07-02	2015-09-14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면) 활용	
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037-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1길 23-15	2009-12-28	2015-09-14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612-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개금길 3-69	2009-04-01	2015-09-14	금이 많이 나왔다하여 개금이라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	
8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979-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2길 475	2009-04-01	2015-09-14	가야산에서 마을 뒤까지 남서로 뻗은 산줄기가 용 같아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9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405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수재길 226-51	2009-04-01	2015-09-14	천재가 살았다는 전설에 따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1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산3-5	경상남도거창군가조면우륵길410-284	2009-04-01	2015-09-14	역사적 인물인 우륵의 탄생지임을 반영한 도로	(거창친환경 CC)

##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규정(안 제19조 행정및재정지원)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055-940-3596, 팩스 055-940-3579, 메일 [marin1341@korea.kr](mailto:marin134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055-940-3596 으로 문의 바라며, 이 조례 개정안은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관련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관련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9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li> <li>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li> </ol> <p>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관련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거창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거창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5. 9. 11.
  - 제공받는 자 : (주)시화
  - 제공목적 :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를 위한 OCR고지서 인쇄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부과대상 건물소재지, 납부금액, 전자납부번호, 고지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OCR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공고기간 : 2015. 9. 15. ~ 2015. 9. 30. (15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5. 9. 11.

거창군수

##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 월 11 일

거 창 군 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

### 2. 제정이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부터 제2조)

나. 지방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별표)

#### ○ 지원대상사업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제 및 축제의 개최
-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 지역문화 국내·외 교류사업
-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 지역 문화시설의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 활동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활동
-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 보조대상 단체가 설립된지 3년 미만, 영리단체, 1회성 행사 및 사업인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

다. 행사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지역문화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4. 입법예고기간 : 2015. 09. 11. ~ 2015. 10. 01. (20일간)

##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문화관광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670-807] 에게 서면이나 메일 (jhj20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55)940-34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군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를 위한 활동과 사업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지역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지역문화 행사 및 축제 등을 개발·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제 및 축제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3. 지역문화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5. 지역 문화시설의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6.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 활동
7.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활동
8.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이거나, 영리 단체, 일회성 행사나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신청, 절차,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역문화 지원사업(제6조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제 및 축제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창한마당 대축제 및 부대행사</li> <li>○ 아림예술제, 거창예총제 등 군단위 행사</li> <li>○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축제</li> <li>○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면단위 이상의 지역 고유의 축제</li> </ul>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지 발간, 백일장 개최, 문화강좌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활동</li> <li>○ 지역 예술단체의 전시회, 음악회, 연주회, 합창제, 발표회 등 공연 전시 활동</li> <li>○ 연극제의 개최, 참가 등 연극 활성화 활동</li> </ul>
지역문화 국내·외 교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 국제교류 활동, 경연대회 참가</li> <li>○ 도 단위 이상 지역문화 활동, 경연대회 참가</li> </ul>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물 등의 제작</li> <li>○ 향토사를 기반으로 하는 책자 발간</li> </ul>
지역 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민을 위한 영화관 활성화 사업</li> <li>○ 지역문화를 알리기 위한 관광투어 프로그램 운영</li> </ul>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윤리 전승보급 및 봉축 행사</li> <li>○ 충효·예절교육, 성년례 등 전통 재현행사</li> <li>○ 3.1민속문화제 등 지역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행사</li> </ul>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법률에 위임 없이 원칙적으로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라도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하도록 개정(안 제13조)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한 날의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안 제13조 4호)

4. 입법예고기간 : 2015. 09. 15. ~ 2015. 10. 05. (21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이나 메일 (kts135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주민생활지원실 ☎(055)940-875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읍·면복지회관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1부.

## 거창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취소한 날의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의 사용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 반환) <u>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u>	제13조(사용료 반환) <u>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사용 예정일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u>	4. <u>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취소한 날의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의 사용료</u>

# 규제영향분석서

##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① 규제사무명	○ 사용료 반환	② 구분					
		신설		강화		내용심사	○ 존속기한 연장
③ 작성자	소관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자 인적사항	▶ 주민생활지원실장 : 이동순 ▶ 복지정책담당주사 : 강준석 ▶ 담당자 : 김태수					
④ 근거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⑤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 ○ 분석방법 - 규제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 해당 없음 -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 해당 없음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불특정 다수인 (배수설치 사용개시 등의 신고자)	불특정 다수인	입법 예고	의견 없음		
-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⑥ 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  ○ 변경 규제 - 사용허가를 취하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함						
⑦ 규제 존속 기한과 사유	○ 규제존속기한 : 상위법령 개정 시까지						

## II.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 1. 규제의 필요성

#### 가. 규제의 신설·변경 필요성(배경)

- 법률에 위임 없이 원칙적으로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나.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 없음
-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없음

### 2. 비용·편익 분석 비교

#### 가. 규제로 인한 비용 분석

- 규제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나. 규제로 인한 편익 분석

-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에 대하여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가.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 가.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없음

#### 나. 규제의 명료성

-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하게 함.

####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실시중(2015. 9. 15 ~ 10. 5)
- 부서 의견조회(2015. 9. 15 ~ 10. 5)

#### 라. 규제집행의 실효성(규제집행 능력)

- 실효성 확보에 문제없음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개정 지방재정법(2015.5.28.)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명확화
- 고령 명예수당 수혜자의 잔여 수혜기간을 감안 명예수당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나라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월 8만원 ⇒ 월 10만원)

3. 주요내용

- 제7조(보훈단체 지원)

현 행	개 정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의 운영 및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 2. ----- 3.(삭제) 3.(신설) 현충일, 6.25기념식 등 국가지정 기념행사 및 안보행사 4.(신설) 보훈회원 및 유족의 건강

	재활, 편의증진, 위안행사, 단합 체육행사 등 복지향상사업 5.(신설)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 등 호국영령 위령사업 6.(신설) 보훈시설 신설 및 유지 관리사업 7.(신설) 안보증진교육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	--

○ 제10조(보훈단체 지원)제2항제1호

현 행	개 정
1. 명예수당 : 월 8만원	1. 명예수당 : 월 10만원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소요예산 : 173,000천원(2016년 추가 소요액)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arimdo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주민생활지원실 복지정책담당 **☎ (055)940-309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현충일, 6.25기념식 등 국가지정 기념행사 및 안보행사
4. 보훈회원 및 유족의 건강재활, 편의증진, 위안행사, 단합체육행사 등 복지향상사업
5.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 등 호국영령 위령사업
6. 보훈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
7. 안보증진교육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제10조제2항제1호 중 “월 8만원”을 “월 10만원”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합치 사항을 수정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여 이를 조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우선사용 허가대상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 추가  
(안 제1조, 제2조, 별표, 별지 제1호, 제2호)
- 허가 취소된 자의 3년간 재신청 제한 조항 삭제(안 제8조 제2항)
-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신청서식 개정  
(별지 제1호, 제2호)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1308] 에게 서면이나 메일 (jeu1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주민생활지원실 복지정책담당 **☎(055)940-309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별지 제1호 ·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p> <p>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p>	<p><b>제1조(목적)</b>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 ----- ----- -----.</p> <p><b>제2조(정의)</b></p> <p>1.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별표]

##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대상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 1~3 급으로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 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부양가족 2인 이 상자로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 조의2에 의한 대상 자 중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의3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따른 수급 자
2	장애등급 4~6 급으로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부양가족 2인 미 만자로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 조의2에 의한 대상 자 중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의3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따른 수급 자 이외의 자
3	장애등급 1~6급 일반장애인	65세 이상 일반노인	일반 한부모 가족			





거창군 공고 제2015-810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계획(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5년 9월 16일

## 거창군수

1. 사업 목적 : 농지조성(배추단지 조성)
2. 사업지구명 : 농산지구
3. 위치 :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산67번지
4. 사업시행면적 : 지적면적 69,822㎡  
신청면적 4,930㎡
5. 사업개요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확대)
6. 총사업비 : 18,000천원
7. 사업기간 : 2015. 09 ~ 2016. 08. 31(12개월)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거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공고 제2015-18호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2. 개정이유

가.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시간을 개정하고  
사용료 기준을 마련함.

나. 사회,경제,문화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을  
사용료 감면대상에 반영하여 여가생활 향유.

### 3. 주요내용

가.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 제①항 제1호 개정

○ 다만 볼링장과 탁구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나. 제11조(사용료) 제①항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볼링장 시설 준공에 따른 사용료 기준마련

## - 국민체육센터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어른·노인	청소년·군인	일반인	비 고
볼링장	1회권	개인	1,500	2,000	2,500	1회 1게임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1일 2시간
		12회	15,000	20,000	25,000	“

### 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④항 제4호, 제5호 신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우편번호 670-803] 에게 서면이나 메일 (goose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시설담당 ☎(055)940-873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1.

다만 볼링장과 탁구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 제15조제4항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	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1. 다만 볼링장과 탁구장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12시까지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④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별 표]

거창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국민체육센터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어린이·노인	청소년·군인	일반인	비 고
수영장	1회권	개 인	1,500	2,000	2,500	1회 2시간
		단 체	1,300	1,700	2,200	“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
		12회	16,000	21,000	27,000	“
탁구장	1회권	개 인	1,000	1,500	2,000	1회 1시간
	월사용	1개월	15,000	20,000	25,000	“
		12회	11,000	15,000	18,000	“
볼링장	1회권	개 인	1,500	2,000	2,500	1회 1게임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1일 2시간
		12회	15,000	20,000	25,000	“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공고 제2015-20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거창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 및 제6조(위탁운영)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업무추진의 연속성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위탁운영)제3항 규정의 민간위탁기간을  
4년으로 개정하고, 별지신청서식의 성별분리통계 구축 필요성 권고로  
남·여성별구별란을 별도로 추가하여 업무 현실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민간위탁 기간 변경(안 제8조 제3항)

나. 별지신청서식에 성별기입(안 별지제1호, 3호, 5호, 6호, 7호)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우편번호 50126] 에게 서면이나 메일 (junsbyu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청소년담당 ☎(055)940-870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9. .
제 출 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 1. 제안이유

○ 청소년수련시설 및 이용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중 관련단체에 대한 원활한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 반영을 위해 위탁계약기간 조정 및 시설이용신청서 및 관련신청서식에 성별을 기입하여 성별분리통계 구축으로 청소년활동시설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민간위탁 기간 변경(안 제8조 제3항)
- 나. 별지신청서식에 성별기입(안 별지제1호, 3호, 5호, 6호, 7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9월 중(20일간)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따로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

## 거창군 규칙 제 호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군수는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 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성별을 기입한다.

제2조 제3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성별을 기입한다.

제6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성별을 기입한다.

제7조 관련 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성별을 기입한다.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7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성별을 기입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자 기록부

이용시설명 : ○○○

일련 번호	일 자	성명	성별	학교/학년 직장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 용 내 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비고
						시설구분	시작시간	종료시간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6호서식]

## 과학관 관람 현황 1일 보고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주 사	소 장	부군수	군 수

(단위 : 원)

구 분		금액	인 원		수입액	비 고
			남	여		
계						
개인	소 계					
	어 른	3,000				
	청소년 및 어린이	2,000				
단체	소 계					
	어 른	2,500				
	청소년 및 어린이	1,500				
체험관	체험기구	2,000				
무료	소 계					
	어린이 (6세 이하)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그 밖에 (공무 등)					

[별지 제7호서식]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수탁운영 신청서

신청자(단체)			
주 소			
성 명(대표자)	남		
	여		
단체·법인 설립근거			
재 산 계	천원(동산 :	천원, 부동산	천원)
수탁운영조건	(기재사항 별지작성 가능)		
<p>「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을 수탁 운영코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p> <p><b>거 창 군 수 귀 하</b></p>			
<p>구비서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li> <li>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li> <li>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li> <li>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li> <li>5. 대표자 사용인감계</li> <li>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li> <li>7. 수련활동장비보유현황(청소년수련원에 한한다)</li> </ol>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탁운영) ③ 군수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 할 수 있다.</p>	<p>제8조(위탁운영) ③ --- -----            -- 4년 이내로 하고,-----            -----            -----.</p>

## 관계법령

###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5.5.4.] [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7호, 2015.1.20., 일부개정]

###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2015.1.20.>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체육청소년사업소)

( 제정) 2014.05.28 규칙 제1156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등)

- ①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 여부 및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서명하여야 한다.
- ④ 청소년활동시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 제3조(사용료 징수)

- ① 사용료는 영수증을 발부하여 징수하며, 영수증 서식은 각 청소년활동시설의 내규 서식에 따른다.
- ② 제2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이용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청소년지도자부터 수련활동을 지도 받고자 할 경우에도 수련활동 지도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시간)

- ①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며,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 10:00~18:00
  2. 동절기 :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 10:00~17:00
- ②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는 이용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휴관일)

- ①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휴관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 ②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날), 1월 1일, 설·추석연휴에 휴관한다.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시에는 임시로 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3일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 ①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별지 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일일 이용현황을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실적 작성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 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강사 초빙)

① 군수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대장 등 비치)

군수 및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 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4.5.28 규칙 제11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